

[사 건 명] 행심 2019 - 77

『정보부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피청구인이 2019. 5.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 처분을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회의 성명 및 직위(교감, 교사 등)를 공개』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 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4. 29.(1차 심의), 2019. 5. 10.(최종심의)에 개최된 피청구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고 한다)와 관련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서 2019. 5. 10. 학폭위 최종심의 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 한다) 제 14조 제5항에 명시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자 2019. 5. 2. 피청구인에게 ‘2019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 나. 2019. 5.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교원위원 총 5명’ 이라고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 다. 2019. 5. 1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을 전부공개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공개하고 있어, 2019. 5. 16.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피청구인은 2019. 5. 13. 정보 전부공개 결정 통지서를 이메일로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회신한 정보는 문서 원문도, 원문의 부분공개도 아닌 “교원위원 총 5명” 이라는 7글자가 전부였으며, 통지서상에는 공개일자가 2019. 5. 9.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전담기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
- 나. 또한 통지서 상 공개장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빈칸인 상태로 회신하였으며 불복 절차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다. 피청구인이 제공한 정보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기에는 정보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담기구의 교사 정보를 알아야 피해자 측이 학교 측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교사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의 제2항 및 제5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라. 또한 교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으나, 제6호의 ‘라’ 항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

원의 성명과 직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바.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5항에서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만일 청구인이 알려주고 싶지 않다면 실태조사 요구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사전에 그 방법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사. 전담기구 교원위원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 법령 또한 없고, 전담기구 교원위원의 이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항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에 해당하여 공개 대상이 된다.

아. 피청구인은 전담기구 교원위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학생들의 합목적적인 교육, 정상적인 학교 경영, 학생 교육권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전담기구의 교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빠른 신고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 ****학교의 경우 전담기구 교원 명단은 물론 학폭위 위원명단까지도 교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한 사례가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취지를 전담기구 구성 교사의 정보를 알아야

그 정보를 통하여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 측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담기구는 교원들로 구성된 사실을 확인하는 기구일 뿐이며, 필요한 조치는 학교장의 긴급조치 혹은 학폭위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나.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교원위원들의 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근거법령은 없고, 교원위원의 정보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학생들의 합목적적인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위원회의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위원들의 정보는 정상적인 학교 경영과 학생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고, 공개 시 부정적인 영향력과 폐해가 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련법규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2. 3. 21.>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정보 공개 청구한 ‘2019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라항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기구이고,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구성된다(학교폭력법 제14조 제3항 전단).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고(학교폭력법 제14조 제3항 후단),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학교폭력법 제14조 제4항). 또한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학교폭력법 제14조 제5항).

위와 같은 전담기구 역할, 피해자 측에 실태조사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담기구 구성원인 교감, 교사는 임명될 당시부터 성명, 직위가 공개될 것이 예상되었다. 전담기구 실태조사의 투명성, 공정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 구성원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전담기구 구성원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전담기구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담기구 구성원 명단 공개로 얻는 공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다.

구체적인 공개범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9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자료의 원문 전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제한 없이 전부 공개하는 것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항에 따라 그 중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3. 소결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항에 따라 전담기구 구성원의 각 성명, 직위(교감, 교사 등)는 공개함이 타당하다.

V. 결 론

피청구인이 2019. 5.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의 성명 및 직위(교감, 교사 등)를 공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